

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(규정 제5조제1항 관련)

가. 평가표

항목	심사내용	평가방법
재정 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본금의 규모 · 자기자본 비율 · 유동성 비율 	신청인의 재무관리상태 판단 · 실질자본금 규모로 평가 ·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로 평가
교육 시설 · 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설확보 여부 · 시설기준 · 편의시설 · 교육기자재 	시설규모 · 확보여부 등을 평가 · 확보여부 평가 · 교육인력과 강의실·강당의 규모평가 응모기관을 위원회에서 순위평가 · 휴게실, 체육실 등 편의시설 확보정도평가 · 기자재 설치현황 평가(비디오 · 환등기 · 컴퓨터등)
확보 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사 · 대표자 · 운영요원 	응모기관을 위원회에서 순위평가 · 자체 및 외래강사의 수준 평가 · 대표자 자질평가 · 소정기준에 따라 평가
운영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정개설 시기 및 반 편성계획 · 교육비 적정성 · 재정운영계획 	응모기관을 위원회에서 순위평가
교육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의 종류와 내용 	다음 착안사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순위평가 · 교육과정별 · 등급별과정별 편성과목의 적합 여부 · 실습 · 견학 등 교과목의 교육편성 내용 등 · 교과목의 교안작성 내용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기준으로 제시한 사항 	응모기관을 위원회에서 평가